

EU 산업가속화법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

- 3.4일, EU 집행위원회 산업가속화법 발표

- 자동차·철강·배터리 협회 및 주요기업 대상 영향 및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박동일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3.5일(목) 10:00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자동차, 철강, 배터리 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법안 시행시의 업종별 영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3.4일(현지시간) 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산업가속화법 초안을 발표하였다. 동 법안은 에너지집약산업 및 자동차 산업의 공공조달과 구매·소비 지원 제도에 저탄소·역내산 요건을 도입하며, 신흥 전략 제조 부문에 대한 일정 외국인투자에 대해 지분제한, EU 노동자 고용 등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첨부자료 별첨).

이번에 발표된 법안은 EU 원산지 인정에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의 제품·서비스를 역내산과 동등하게 대우하며, EU와의 무역협정이 적용되는 투자에 대해 외국인투자 승인 조건 적용도 배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전기차 역내 조립 요건에 대한 우려, 저탄소 철강 상세 기준 등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현대차는 “우리나라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 포함되어 다행”이라고 하며, 향후 EU 역내 조립 조건도 완화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산업부는 동 법안이 우리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세부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대응할 예정이며, 기업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3.5일 벨기에에서 진행되는 한-EU 신통상 과장급 회의를 통해 우리측 입장을 EU에 전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대응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구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양정식 (044-203-5660)
		담당자	사무관	하정욱 (044-203-5666)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태현 (044-203-4210)
		담당자	사무관	이수창 (044-203-4212)
	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과	책임자	과 장	임채욱 (044-203-4320)
		담당자	사무관	신상훈 (044-203-4321)
	첨단산업정책관 배터리전기전자과	책임자	과 장	강규형 (044-203-4260)
		담당자	사무관	강봉조 (044-203-4266)
	산업공급망정책관 철강세라믹과	책임자	과 장	강연주 (044-203-4690)
		담당자	사무관	이두정 (044-203-4691)

참 고

EU 산업가속화법(3.4 발표) 주요 내용 정리

1. 공공조달 및 구매/소비 지원제도 : 저탄소·역내산 요건 등 의무 부과

- (역내산 기준) EU 관세법에 따른 원산지 규정에 따라 판단
 - EU와 FTA를 체결했거나 GPA(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의 제품/서비스는 기본적으로 EU 역내산과 동등 간주(상호주의 위반 등을 이유로 제외 가능)
- (저탄소 기준) 관련 제품법의 위임법령에서 정한 요건 충족, 기존 법령이 없는 경우 온실가스 집약도 기반의 자발적 분류 체계 도입 가능
- (공공조달) 부속서 II(에너지집약산업) 및 III(차량) 해당 제품/서비스* 관련 ①입찰 참여 제한**, ②입찰 참여시 저탄소·역내산 요건 부과 등 규정
 - * (에너지집약산업) 철강·콘크리트/모탈·알루미늄 및 이에 주로 의존하는 제품 (자동차산업) 전기차(PEV),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OVC-HEV), 연료전지차(FCV)
 - ** 공공조달 시장 접근 관련 국제협정을 미체결한 제3국에 설립된 주체가 소유·지배하는 기업
 - (제한) EU와 공공조달 시장 접근을 보장하는 국제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제3국에 설립된 주체가 소유 또는 지배하는 기업은 조달 참여 배제
- (공공지원) 구매/소비 지원제도 설계시 저탄소 및 역내산 요건 적용 의무, 요건 내용은 공공조달 입찰 참가시 부과요건과 동일
- (소형 무공해차량 슈퍼크레딧) 자동차 CO2 배출규정에 따라 소형 무공해차량에 대한 슈퍼 크레딧 인정 관련 역내산 요건 규정(역내 조립 등)

2. 외국인투자 승인 조건 부과

- (대상) 신흥 전략 제조 부문*에 대한 FDI로서, 제3국의(글로벌 제조역량의 40%를 초과) 투자자가 1억 유로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
 - * △배터리(BESS), △전기차 및 관련 부품, △태양광, △핵심원자재(채굴·가공·재활용)
 - △EU와의 무역협정이 적용되는 투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승인 조건) 권한 당국은 투자가 6개 조건* 중 4개 이상을 충족하는 투자만 승인하되, EU 노동자 50% 이상 고용 조건은 반드시 충족 필요
 - * (필수) △전체 인력의 50% 이상을 EU 노동자로 고용
 - (선택) △지분의결권 49% 이하 보유, △합작투자(JV) 참여, △IP 및 노하우 라이선싱(기술이전) 등
- (승인 결정) EU 회원국은 관련 회원국과 집행위와 투자 승인조건을 합의하되 회원국 간 합의 불발시 EU 집행위가 투자 승인 조건 결정

3. 기타 주요 내용

- (집행위 권한) EU 집행위는 역내산 비중 계산 및 검증 방식 규정, 역내산·저탄소 요건 변경, FDI 규제 대상 추가 지정 등 권한 보유
- (재생에너지 경매시 비가격 기준) 회원국은 재생에너지 경매 설계 시 비가격 기준(원산지·회복탄력성/지속가능성 등) 도입 의무화